보성군의회 입법예고 제2026-15호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보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지방인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과 특정 직위 및 업무 수행 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 세부기준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 (현행) 수급자, 한부모 → (개정)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직급별 응시연령 구분 삭제 및 18세 이상으로 일원화(안 제10조)**

- (현행) 7급(20세 이상), 8급(18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정비**

- 관련 분야 필요 근무·연구 경력 기준 변경(안 제17조제2항, 별표10)
  (기존)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필요
  → (개정) 채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필요경력 (민간경력에 한함) 1년 이내 단축 가능
- 학위 요건 충족 기준일 변경(안 제17조제6항)
  (현행)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 요건 충족 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일)
  → (개정) 박사 및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요건 충족 기준일: 임용예정일
-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력 기준 변경(안 별표3)
  (현행) 기준 경력 산정시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개정) 기준 경력 산정시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

○ **특별승진 임용기준 추가 신설(안 제27조)**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핵심 인사교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포함
- 특별승진대상자 인정기준에 기능명장이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공무원 포함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근거 신설(안 제28조)**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핵심 인사교류 근무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범위를 최대 1년으로 지정

○ **자격증 명칭 현행화(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7, 별표9)**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현행화

○ **문구 및 오탈자 수정**

3. **개정 규칙(안)**: 붙임

4. **예고 기간**: 2026. 11. 19. ~ 11. 24.(5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1-850-5815)

- 규칙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우 59457)

보성군의회 규칙 제 호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갈음”을 “제출서류의 제출을 갈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란”을 “해당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9조제2항 본문 중 “해당여부”를 “해당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각각 “경력

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이상이어야”를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0]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상당계급의봉급”을 “상당계급의 봉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시험요구일) 현재를”을 “시험요구일)을 기준일로 하고, 제5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일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계산함에 있어서는”을 “계산할 때”로, “대해도”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7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으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제2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략)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 ---------- -------- 제출서류의 제출을 갈음--.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응시수수료) ① --------- ---------- ---------- ---------- ---------- ---------- 해당란----------.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생략)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 해당여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	제10조(응시연령) ① ---------- ----------

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 ---- 18세 이상이어야 ------ ----------. <삭 제> <삭 제>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 ---------- ---------- ---------- --. ---------- ---------- ----------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의2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 ---------- ---------- ----------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과 별표 4와 같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② ----------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 ---------- ----------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0]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어야 ---. ---- 상당계급의 봉급---.
<신 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신 설>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 설>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④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⑥ ---------- ---------- ---------- ---------- ---------- ----------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시험요구일)을 기준일로 하고, 제5항의 학위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일을 ----. --- 계산할 때 ---------- ---------- 대해서는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후단 신설>	2. ---------- ---------- ---------- --------.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으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

	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 ----------제5호----------
<신 설>	제28조(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 ~ 제30조 (생 략)	제29조 ~ 제31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 · 2급	한글속기 1 · 2 · 3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데이터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거거,~~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거거, 통신거거, 통신선로,~~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라~~, 프로그래밍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거계정바~~,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거계정바~~, 조경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 · 2급	한글속기 1 · 2 · 3급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설비보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거거~~,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거거, 통신거거, 통신선로~~,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설비보전, 조경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 직무분야	2급·연구관지도관	3급·연구관지도관	4급·연구관지도관	5급·연구관지도관	6급·연구사지도사	7급·연구사지도사	8급	9급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0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가 어려워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장